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34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6
1. 제정안의 체계	6
2. 총괄적 검토	7
3. 총칙(제1장)	10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제2장)	12
5. 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 및 신고(제3장)	19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제4장)	28
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특례 등(제5장)	3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9. 16.

다. 회 부 일 : 2025. 9.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반 시설임. 이에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인공지능시스템·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며 국가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민간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

현행 법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원활

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첫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둘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책을 적시에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데이터가 필요하나, 현재 신고 제도 등 정확한 현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셋째,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현행 법제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기존 법령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민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입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정의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통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하려는 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등을 위하

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복합 인허가등 사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접수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개시 요청,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부대시설의 설치, 자금 융통·투자 등 각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인식 제고, 협회 설립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감면 등의 조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제외 및 「건축법」상 승강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의 설치의무 적용 예외, 그 밖에 입지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6개 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14조(금융 지원)
제1조(목적)	제15조(보조금 지급)
제2조(정의)	제16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제3조(국가의 책무)	제17조(지역사회와의 협력)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협회)
제2장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5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특례 등
제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세제에 관한 특례)
제6조(실태조사)	제20조(「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7조(통계의 작성)	제21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법률적용 특례)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장 복합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및 신고	제23조(「항만법」에 관한 특례)
제9조(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	제2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0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고)	제6장 보칙
제4장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1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전문인력 양성)	
제13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2. 총괄적 검토

-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로¹⁾,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전세계 데이터센터 매출은 2023년 3,728억 달러에서 2029년 6,2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²⁾.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데이터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국, 촬영소 등 다른 방송통신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분류되어³⁾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⁴⁾,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국회도서관, ‘글로벌 데이터센터 지형도’, “THE 현안” 2024-38호, 2024.12.18.

3)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⁵⁾ 등 소규모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열섬현상, 전자파 우려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무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⁶⁾,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구축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도입하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률 간 정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례적 성격의 규정의 경우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즉, 인공지능기본법의 체계 보완, 일부개정 등을 통해 제정안의 취지를 답을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입법경제적 측면을 감안하여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5)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진균, “갈 곳 잃은 도심 속 데이터센터...주민 반대 해법 찾을까”, 파이낸셜뉴스, 2024.9.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체계 정합성 및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일부 조문의 수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의 조문별 검토에서 논의하겠음.

3. 총칙(제1장)

가. 정의(안 제2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2) 제정안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인공지능’,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의미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것임.
-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정의와 관련하여,
- 한민수의원안은 정동영의원안과 달리 인공지능기본법의 정의를 인용하

여 법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입법 방식으로 보임.

- 다만,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정의를 위임하여 그 범위를 다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범위를 다르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나 용어를 준용하고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제2장)

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1) 제정안 요지

- 국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음(안 제5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등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5조 제2항).

(2) 제정안 조문

제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등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5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확충,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시책 마련 근거를 규정하고,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인공지능 시대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종합적인 시책 마련은 구체성이 있는 기본계획과 관련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책무와 연관이 있으므로, 안 제3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공지능기본법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⁷⁾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과 기반 조성

7)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을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입
법조치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해 규정하는 제정안과 인
공지능 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제정안의 취
지에 맞춰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임.

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안 제6조 및 제7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통계를 작성할 때 「통계법」을 준용함(안 제7조).

(2) 제정안 조문

제6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2.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통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도록 규정⁸⁾하고 있어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는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관한 것이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사업자나 관련 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 요청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8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
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안 제8조).

(2) 제정안 조문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8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과 기반조성을 담당하는 전
담기관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보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제정안은 전담기관이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국가재정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
의 운영 등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특정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경우 출연 목적이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지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인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반영하여,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출연금은 그 목적에 따라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사업출연금(350-02)으로 비목이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적법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함.

5. 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 및 신고(제3장)

가. 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안 제9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사업을 위해 다음의 인허가등의 절차가 2개 이상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이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9조 제1항).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등

-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 신청서 및 관련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토 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제3항 및 제4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처리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제5항).
 - 신청내용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제1호)
 - 제3항의 일괄처리 신청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일괄처리 접수 사실 및 일괄처리 신청서등을 통보하고 인허가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하여야 함(제6항).
-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의 요청을 받은 다음 날부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거나 90일보다 긴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내에 인허가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가 인허가등의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함(제7항)

-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8항).
-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포함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단서).
- 제7항의 기간(제8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관계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인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등을 한 것으로 간주함(제9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제7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처리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제10항).

(2) 제정안 조문

제9조(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등록 및 이와 관련된 동의·협의·평가·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절차가 2개 이상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이하 “일괄처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

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6.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접수 절차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창구 일원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 신청서 및 관련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자료(이하 “일괄처리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서등을 검토한 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처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제3항의 일괄처리 신청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일괄처리 접수 사실 및 일괄처리 신청서등을 통보하고 인허가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의 요청을 받은 다음 날부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거나 90일보다 긴 경우에는 90일로 한

다) 내에 인허가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가 인허가등의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포함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제7항의 기간(제8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관계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인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제7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처리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9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다수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여러 인허가등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한 기간(최대 12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인허가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하려는 것임.

○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인허가의 제9)라고 함.

- 제정안에 따른 일괄처리는 주된 인허가가 없다는 점에서 인허가의제와 차이가 있으나 ① 그 목적이 행정절차 간소화에 있다는 점, ② 복수의 인허가 효과가 한번에 발생한다는 점, ③ 일정기간 동안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인허가 간주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 유사함.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여러 법률의 인허가를 모두 개별로 받으면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일괄처리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관계기관의 장의 기간 내 통지가 없어 일괄처리가 이루어지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한이 없는 인허가가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인허가의제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고 법률에 관련 조문과 인허가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일괄처리 대상을 임의로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안 제9조 제1항 제6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 연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일괄처리 제도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것이지 ‘점검절차의 중복’이 발생하

9)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는 것이 아닌 점,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서류를 보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촉진하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과 별도로 신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괄처리 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일괄처리 신청에 대해 점검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서류를 보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소방청은 건축물 화재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사회적 영향이 현저히 커 건축허가 동의 단계에서 화재예방 및 진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괄처리 대상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고(안 제10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건축장소, 운영목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안 제10조 제1항)
- 제9조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복합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받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제2항).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 이나 특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실시할 수 있음(제3항).

(2) 제정안 조문

제10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고)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건축 장소, 운영목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9조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복합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받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이나 특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일괄처리를 받은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시책 수립·시행과 공공·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만을 규정¹⁰⁾하고 있어, 현행법 체계에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한 허가·등록·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규정은 별도로 없고 건축법 등 일반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앞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 다량의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지역사회와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신고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됨.

10)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제4장)

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원(안 제11조부터 제16조)

(1) 제정안 요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 전력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1호)
 - 도로의 건설(제2호)
 -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 통신시설의 설치(제3호)
 - 그래픽 처리 장치, 신경망 처리 장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의 사업화를 위한 구입 지원 또는 제공·임대(제4호)
 -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우수 인력의 채용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5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6조).

-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제1호)

-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제2호)

- 국가 간 공동 연구·개발(제3호)

-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제4호)

-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제5호)

-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6호)

(2) 제정안 조문

제11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력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 도로의 건설
3.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 통신시설의 설치
4. 그래픽 처리 장치, 신경망 처리 장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의 사업화를 위한 구입 지원 또는 제공·임대
5.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우수 인력의 채용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지원,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금융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지급)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하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공동 연구·개발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검토사항

- 안 제11조부터 제16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반시설 및 설비 우선 지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내 부대시설 설치·운영 자금 지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 국제협력과 관련
기술·서비스의 해외진출 촉진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 데이터센터 관련 기관의 운영 또는 교육훈련 등 지원받는 경
비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는 수정이 필요함.
- 또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적법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하므
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규정에 반영할 필
요가 있음.

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안 제17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또는 확장하려는 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1항)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또는 확장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과의 교류 및 상생을 위하여 총 건축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바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인접한 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기여 사업을 하여야 함(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제3항).

(2) 제정안 조문

제17조(지역사회와의 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 또는 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또는 확장하려는 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또는 확장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과의 교류 및 상생을 위하여 총 건축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바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인접한 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사항

- 안 제17조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구축·확대를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지역사회 기여사업 추진 의무를 부과하는 하려는 것임.
- 그리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상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등을 명목으로 불합리한 부담이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안 제17조 제2항은 모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데이터센터의 입지 특성상 인근에 주거지역이나 지역사회 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음.

- 이는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일정한 재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확대를 저해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활성화라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추가로, 조문에 사용된 ‘비율기간’이라는 용어는 문언상 의미가 불명확하고 실질적으로는 총사업비(또는 건축비) 중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협회(안 제18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8조 제1항).
-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제2항).

(2) 제정안 조문

제18조(협회)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8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특수법인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과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다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먼저 민법의 취지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그 운영과정이나 성과 등을 살펴

가며 추후 특별법상 설립근거(인가)를 둔 협회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자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 설령,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회에게 법인격을 부과하더라도 법인으로서는 경제활동을 하려면 그 법인의 존재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시하는 행위로서의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함¹¹⁾.
- 제정안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¹²⁾을 준용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협회의 성립요건과 같은 주요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설립등기를 협회의 성립요건으로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파괴검사협회의 성립요건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를 규정¹³⁾하고 있음.

11) 법제기준과 실제

12)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3) 제18조(협회의 설립) ① 사업자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특례 등(제5장)

가. 세제에 관한 특례(안 제19조)

(1) 제정안 요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과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9조).

(2) 제정안 조문

제19조(세제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과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12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세제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법상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¹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¹⁵⁾ 등 조세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제정안에

14)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각호생략)

15)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세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고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상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필요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규정을 둘 실익도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이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특례(안 제20조)

(1) 제정안 요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설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함(안 제20조 제1항)
 - 운영 중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연산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장하는 경우(제1호)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제2호)
-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력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0조 제2항).

(2) 제정안 조문

제20조(「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설의 구축·운영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운영 중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연산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장하는 경우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력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0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새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운영 중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규모(연산량)를 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 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한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부여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협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¹⁶⁾으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¹⁷⁾.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협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7)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① 10메가와트 이상(10메가와트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②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임.
-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별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은 계속 지연되고 있어 현재 국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력계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수전시설이 새로 운영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역의 전력계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전력계통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음.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기사용량은 센터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소형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10MW 이상으로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신규로 구축되거나 추가적으로

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 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0MW이상의 전기를 사용한다면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이 됨.

- 개정안은 이미 운영 중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연산량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이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여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다만,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 전기사용시설이 지역 전력계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안 제20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산량 증가가 있는 경우’를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면 연산량 증가의 상한이 없어 면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전력량’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사용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양 법령 간 용어의 불일치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용어를 ‘전기사용량’으로 통일하여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데이터센

터의 조속한 구축과 관련 전력 증설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하고, 연산량 조건의 경우 데이터센터의 연산 성능과 무관한 전기사용량 증가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며 대통령령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력량의 상한을 정하면 면제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정합성 및 사업자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고,

연산량 확장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는 계통여유가 낮은 지역의 급격한 계통불안, 전력자원 고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는 등

대규모 전력부하의 대부분이 데이터센터인 상황에서 전력량 증가에도 구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면제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형해화가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법률적용 특례(안 제21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하여 다음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안 제21조)
 - 「건축법」 제64조제1항(제1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호)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제3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제4호)

(2) 제정안 조문

제21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법률적용 특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64조제1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3.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

(3) 검토사항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그 규모와 용도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른 여러 부대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음.
 -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이고 건축물 용도는 방송통신시설, 공장,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다양하나 최근에는 방송통신시설로 일원화되는 추세임.
- 먼저,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¹⁸⁾하여야 하므로, 규모가 이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 둘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¹⁹⁾해야 하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호 파목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²⁰⁾하여야 함.

18)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9)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개정 2021.7.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0)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개정 2022.1.25.>)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 셋째,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²¹⁾하여야 하는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라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²²⁾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 작품을 설치²³⁾하여야 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방송통신시설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임²⁴⁾.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과. 방송통신시설

21)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3)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 안 제21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이러한 부대시설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다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기는 하나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이동 인원이 상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승강기 설치의무 면제 특례를 규정한 입법례가 아직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방송 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만 특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다른 법률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주차장법」 및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모에 비해 상주인력 및 유동인력이 적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승강기,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미술품 등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토교통부는 다른 건축물과 달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력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품을 설치해야 한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적어 일반 건축물에 비해 승강기 필요성이 낮으므로 승강기 설치
특례 규정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데이터센터의 운영·점검·보안·유지보수 인력이 상주하는 점 및 중량
장비, 부품 운반 및 장애인을 포함한 근무자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
설치를 전면적으로 면제하기보다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또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의 적용 제외는 곤
란하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일부 완화는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을 제출함.
- 산업통상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의무시설과의 형
평성 및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일관성 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용도가 축소
되면 미술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인 반면,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문화
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유관기업이 주민 친화적 인식을 쌓는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터센터 업
계의 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안 제21조 제4호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안 제22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중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로 봄(안 제22조 제1항)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로 봄(제2항).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제3항).

(2) 제정안 조문

제2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중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로 본다.

②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로 본다.

③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22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 가목²⁵⁾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에 속하므로 안 제22조 제1항이 없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에 해당하여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음.
- 마찬가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²⁶⁾해야 하는데,

현행법 체계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별다른 법적 제약없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안 제22조 제3항에 따른 특례 규정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26)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산업통상부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산업집적기반시설’로 분류되며, 사업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여 안 제22조 제3항의 입법 실익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마. 「항만법」에 관한 특례(안 제23조)

(1) 제정안 요지

-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은 같은 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23조)

(2) 제정안 조문

제23조(「항만법」에 관한 특례)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은 같은 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 배후단지는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 배후단지로 나뉘는데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입주자격을 갖추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²⁷⁾해야 하고,

27)제71조(입주계약)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종 및 시설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주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항만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격 요건으로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많은 양의 냉각수와 전력을 필요로 하므로 해수를 활용할 수 있고 전력설비를 갖춘 항만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항만 부지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안 제23조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한만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항만 부지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다만,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양수산부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논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으로 현행 법령의 예외를 규정하기 보다는 현행 법령을 정책적 요구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입주자격에 관한 규제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만 있으므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특례가 적용되는 항만 부지를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양수산부는 안 제23조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타당성은 인정되나 해당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항만법」상 세부조항을 적시하고 항만배후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바. 규제개선 신청 등(안 제24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4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함(제2항 전단).
 -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함(후단).
- 관계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제3항)
 -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단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회신한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제4항).

-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7,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또는 제90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요청할 수 있음(제5항).

(2) 제정안 조문

제24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회신한 결과(검토 내용을 포함한다)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7,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또는 제90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4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함.
-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이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이를 자료 보완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45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되며 30일 범위에서 1회만 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만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가 규제개선 결과를 통지받으면 개별 근거법률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기존에 구축·운영된 사례가 많지 않은 새로운 분야인 만큼 기존 규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안 제24조 제5항은 규제개선 신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실증을 위한 특례와 임시허가를 신청·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통지의 내용에는 조건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문언상 규제개선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에 대해서만 후속적인 절차인 실증 특례·임시허가 신청의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유사 입법례에서는 규제개선을 규정하면서 규제개선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개선 관리·감독과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에 관한 사항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4조는 규제개선 신청·적용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규제개선이 부작용 없이 취지대로 적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임.

규제개선 지원 입법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 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29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49조의 협력모델 및 제23조의4의 공급망안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협력모델 및 공급망안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쟁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제52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② 제51조의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51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17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제15조의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 중 법령 정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 기업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④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절차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024년 기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현황(출처: 한국데이터
센터연합회)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1	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 IT센터	부산 강서구
2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네트웍스 송도 IDC	인천 연수구
3	DB Inc	DB죽전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4	DGB금융그룹	DGB혁신센터	대구 동구
5	Digital Realty	ICN10	서울 마포구
6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서울 중구
7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파이낸스	경기 용인시
8	JB금융	광주은행본점센터	광주 동구
9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염창센터	서울 강서구
10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	경기 김포시
11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여의도센터	서울 영등포구
12	KINX	케이아이엔엑스 도곡센터	서울 강남구
13	KT Cloud	KT청주(분평)IDC	충북 청주시
14	KT Cloud	KT대전(탄방)IDC	대전 서구
15	KT Cloud	KT목동1IDC	서울 양천구
16	KT Cloud	KT강남IDC	서울 강남구
17	KT Cloud	KT여의도IDC	서울 영등포구
18	KT Cloud	KT천안CDC	충남 천안시
19	KT Cloud	KT분당IDC	경기 성남시
20	KT Cloud	KT목동2IDC	서울 양천구
21	KT Cloud	KT용산IDC	서울 용산구
22	KT Cloud	KT부산송정 GHC	부산 해운대구
23	KT GDH	KT GDH	경남 김해시
24	LG CNS	상암IT센터	서울 마포구
25	LG CNS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산 강서구
26	LG CNS	LG CNS 인천센터	인천 계양구